

초저가 하도급 계약 체결 만연

– 기계설비하도급실태조사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계설비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계설비업계에서는 아직도 저가하도급 방지 등 불공정하도급 문제가 중요현안으로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계설비의 하도급의 계약에서 대금지급까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이다.

설문조사 문항은 하도급 입찰, 계약, 대금수령, 동반성장분야 등 총 4개 문항으로 회원사의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했다. 협회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8월 23일 개최된 기계설비건설 공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종합건설업체 기계설비 담당 임원들에게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이 조사 결과를 하도급 실태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편집자 주]

1. 조사목적

-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업계는 아직도 저가하도급방지 등 불공정하도급 문제가 업계 중요현안으로 상존하고 있음
- 이에 기계설비하도급의 계약에서 대금지급까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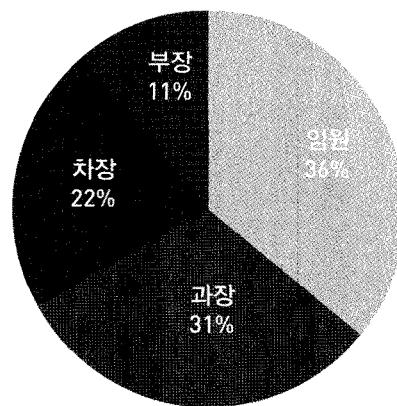
2. 조사 대상 및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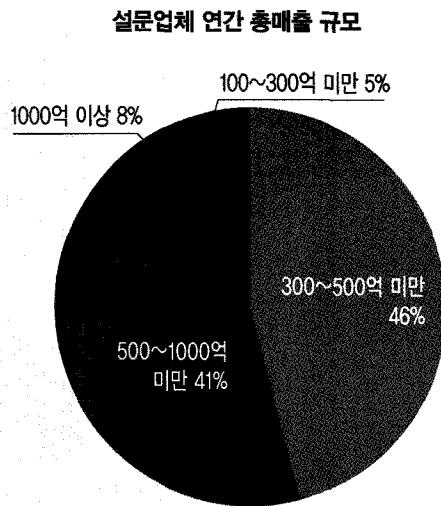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조사지역	전 국
조사대상	종합건설 토건 순위 50위와 2010년 거래관계에 있는 기계설비업체 중 100개사
조사기간	2011. 7. 27. ~ 2011. 8. 10.
조사항목	하도급입찰·계약·대금수령·동반성장분야 4개 항목

3. 설문응답자 특성

설문응답자 직위는 임원이 36%로 가장 많고, 답변 회사의 매출액은 300억에서 1000억원 사이(87%)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자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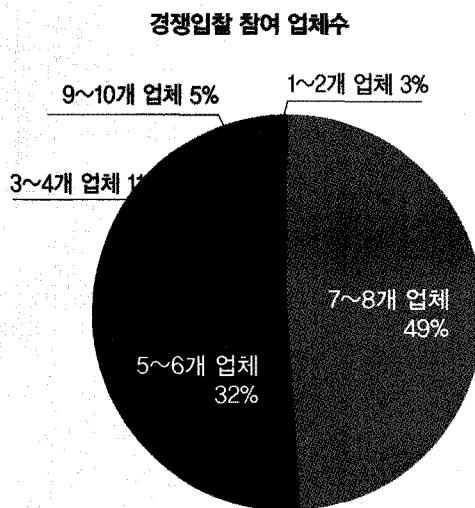


4. 설문조사 결과

가. 입찰 및 계약분야

■ 경쟁입찰 참여업체수

하도급 입찰 시 참여시키는 업체 수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에 7~8개 업체가 49%로 가장 많았고 5~6개 업체 32%, 3~4개 업체 11%, 9~10개 업체 5%, 1~2개 업체 3%로 응답했다. 따라서 하도급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평균 6~8개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5개 이상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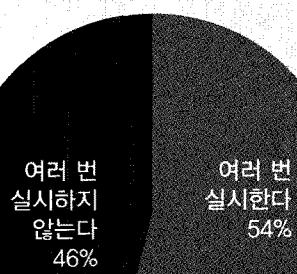


체를 경쟁에 참여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하도급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입찰방법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종합건설업체가 7~8개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킴으로써 치열한 경쟁에 의한 최저가하도급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차례 경쟁입찰 실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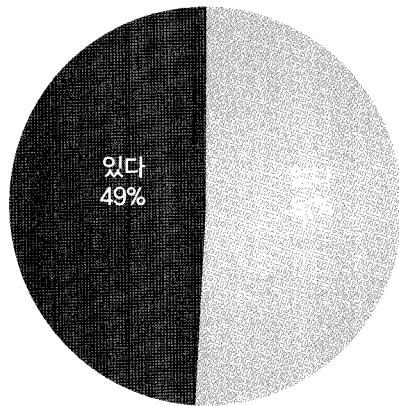
원도급자가 저가하도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 예정금액을 실행금액 이하로 작성하여 하도급 입찰을 여러번 실시하는가의 질문에 응답업체의 54%가 여러번 실시한다고 응답했고 46%는 여러번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로써 대부분의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입찰시 수차례에 걸쳐 재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차례 경쟁입찰 실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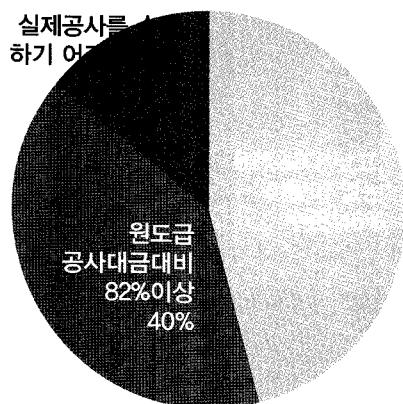


■ 최저가낙찰 불구 계약금액 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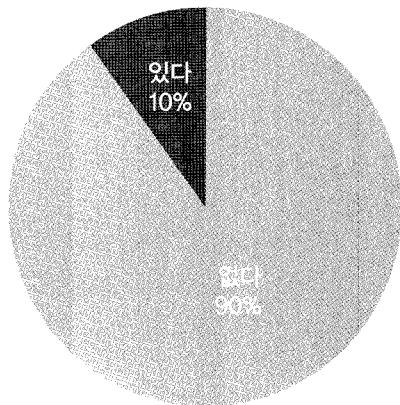
최저가로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가 입찰가격을 다시 감액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는가의 질문에 49%가 낙찰가격을 다시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최저가낙찰 불구 계약금액 감액**■ 하도급계약 체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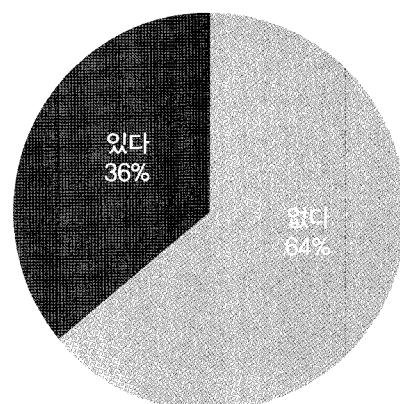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가의 질문에 응답업체의 60%가 원도급공사대금 대비 82% 미만 수준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40%는 원도급공사 대비 82% 이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14%는 실제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윤이 없거나 실제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의 공사대금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60%로 조사되어 저가하도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하도급간 장기적인 협력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하도급금액 현실화가 최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하도급계약 체결 수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지급받은 경험 여부(민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응답업체의 90%가 민간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도급법에 의하여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교부토록 의무화(4천만원 이하,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 원도급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제외)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지급받은 경험 여부(민간)**■ 불공정하도급특약 요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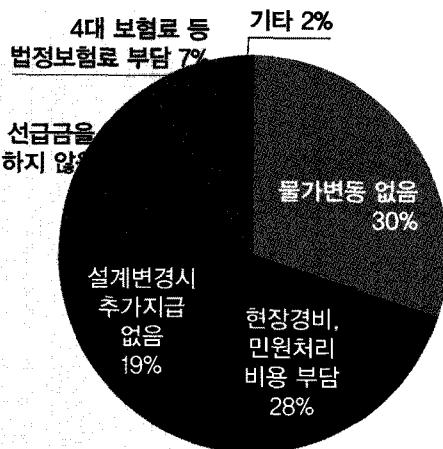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한 특약 설정을 강요받은 경우가 있는가의 질문에 응답업체의 36%가 불공정하도급특약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특약 요구 여부

■ 불공정 하도급특약 요구 유형

불공정한 특약 설정을 강요받았을 경우 특약내용은 무엇인가의 질문에 물가변동 없음이 30%, 현장경비·민원처리비용전가 28%, 설계변경 시 추가지급 없음 19%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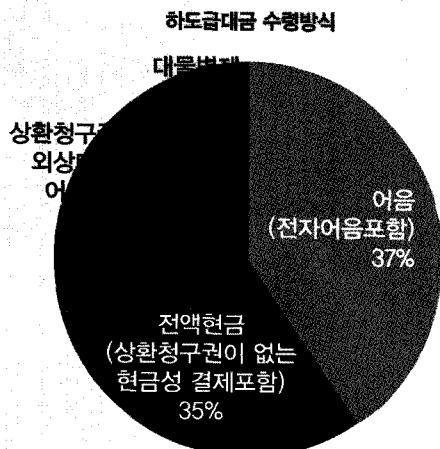
불공정 하도급특약 요구 유형



나. 대금수령 및 동반성장 분야

■ 하도급대금 수령방식

하도급 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받고 있는가의 물음에 37%가 어음(전자어음 포함)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액 현금이 35%,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 대체 결제가 2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우리업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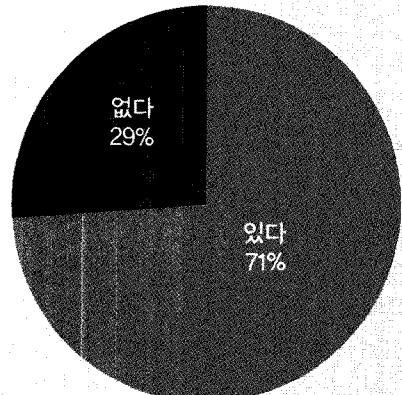


65%가 현금이외 어음 및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금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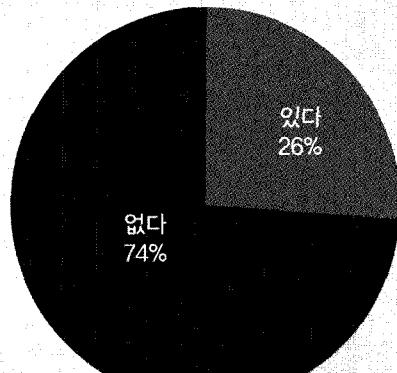
■ 물가변동 반영여부

하도급 계약 시 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변동을 적용받은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공공공사는 71%가 반영 받고 있지만, 민간공사는 74%가 반영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민간공사에서는 여전히 물가변동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로 드러났다.

물가변동 반영여부(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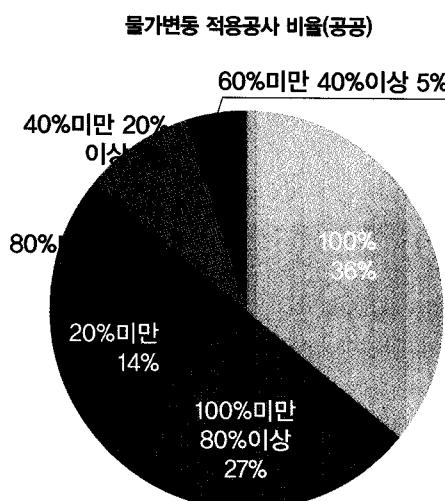
물가변동 반영여부(민간)



■ 물가변동 적용공사 비율

물가변동을 적용받은 공공공사의 경우 몇 건 정도의 공사에 물가변동 적용을 받았는가의 질문에 전체 공사현장 중 36% 만 100% 적용을 받았고, 나머지 80% 이상은 27%, 20% 미만 14%, 20% 이상~40% 미만 및 60% 이상~80% 미만이 각각 9%, 40% 이상~60% 미만이 5%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물가변동을 하도급법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현장이 64%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현장이 물가변동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주요 설비자재가격이 작년 대비 현재 평균 20% 이상 인상된 상황에서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내용을 계약금액에 반영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의 질문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하도급이 29%, 원도급자의 낙찰률 하락이 27%, 실제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저가하도급과 물가변동 미적용이 각각 17%, 금융위기와 기타 이유가 각각 5%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원·하도급자간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첫 번째 이유로 저가하도급과, 특히 그 중에서도 실제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저가하도급, 또 물가변동 미적용 등이 동반성장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원도급자의 낙찰률 하락이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두 번째 사유로 꼽혔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체의 적정수주가격 보장이 원·하도급자간 동반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 대한설비건설협회를 포함한 건설관련 12개 단체(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통신협회 등)가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운동을 추진 중인 것은 적정한 가격수주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으로 보여진다. ◎

■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

